

#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 최선책인가?

“막대한 예산·행정력 낭비” 비판 여론 높아  
미국과 일본은 발생 농장 가금류만 살처분



박정완 기자  
축산경제신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만 살처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의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3km까지 확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많아 살처분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지난달 22일 현재 전국에서 1,276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나 실제로 AI가 발생한 28개 농장의 가금류는 53만여 마리로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 살처분 마리수가 12%인 151만여 마리, 500m~3km 반경의 위험지역 살처분 마리수가 84%인 1,072만여 마리로 나타나는 등 예방적 살처분 숫자가 95%에 이른다.

이 같은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계속 확산되자 비효율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발생농장만을 신속하게 살처분하거나 발생농장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6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일본은 AI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를 보면 규슈지역 구마모토 현의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이 양계장과 농장주가

소유한 동일지역(사가라 마을)의 가금류 2개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약 11만2천 마리 살처분을 신속하게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로써 AI 살처분 보상비용 최소화는 물론 언론의 노출도 상대적으로 적어 AI 발생기간에도 닭고기 소비위축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AI 방역 SOP가 발생농장 계군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마일(3.2km) 반경 내 가금류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의 AI 방역 SOP를 벤치마킹해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살처분 범위를 축소했지만 효율적인 방역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1월 28일 전북 정읍시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당초 전북도에서 3km 반경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2월 7일 살처분 범위를 500m 이내로 축소하고 위험지역 3km 내 가금류는 이동중지 조치만 했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출하했거나 사육이 진행됐다.

이는 반경 3km 농장까지의 적극적인 살처분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에 앞서 2010년 12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실시했다. 500m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었고 3km 반경 내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 없이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3km 이내 가금류는 물론 익산시 전체적으로 AI 추가 발생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이는 AI 발생농장 계군을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한 결과 수평감염 없이 AI가 종료된 사례로 광범위한 살처분보다는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 전례다.

양계 농가들은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방역 현장 사정과 AI 확산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 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AI 방역은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 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한편에서는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없앤다면 향후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져 더 큰 악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최선의 방역대책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AI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 적이고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AI 확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AI 사태로 정부는 방역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손실은 줄이는 방안을 찾아내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